

2023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모집요강

교원연수유학생

일본 문부과학성은, 각국의 교원이며, 소정의 일본대학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는 외국인 유학생(교원연수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아 래

1.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문부과학성은, 일본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을 통해, 일본과 자국과의 가교가 되어, 양국 나라가 세계 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의 자격·조건에 충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1)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일 것. 신청 시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시 일본 이외에 생활거점을 둔 일본국적 소지 이중 국적자에 한해 일본 입국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일본 국적을 이탈할 예정자는 대상으로 한다. 제1차 선발은 응모자가 선택한 국적의 국가 소재의 재외공관에서 실시한다.

(2) 연령

원칙적으로 1988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 예외로는 국적국의 제도·사정(병역의무·전란에 의한 교육기회의 상실 등)에 의해 자격연령 시기에 응모하지 못한 자로 문부과학성이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개인적인 사정(경제상황, 가족사정, 건강상태, 대학 또는 근무처의 사정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3) 학력·직력 등

대학 또는 교원양성학교를 졸업한 자로, 자국의 초·중등 교육기관 현직 교원 및 교원양성학교(대학 제외)의 현직 교원으로, 원칙적으로 2023년 10월 1일 기준 통산 5년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는 자. 단, 현직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4) 일본어 등

적극적으로 일본어 등을 학습하려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관하여 관심이 있고, 일본 입국 후에도 나라가 일본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하는 의욕이 있을 것. 또한 일본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생활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5) 건강

소정의 건강진단서 양식에 따라, 일본유학에 대해 심신 모두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6) 출발시기

원칙적으로, 연수 코스가 시작되는 2주 전부터 코스 개시일 사이 수용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원칙적으로 9월 또는 10월)에 일본 입국이 가능한 자. 본인 사정으로 소정의 기일 이외에 입국하는 경우,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문부과학성이 판단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문부과학성 또는 수용대학이 지정한 기일까지 일본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채용을 사퇴할 것.

(7) 비자취득

일본 입국 전에 원칙적으로 주한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유학' 비자를 새롭게 취득하고, 취득한 재류자격 '유학'으로 입국할 것. 따라서 이미 다른 재류자격(영주자, 정주자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학'으로 변경한 후에 신규로 일본에 입국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비외국인유학생 신분 종료 후에 다시 '영주자',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신청해도 당연하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 새로이 '유학'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 장학금이 지급정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결핵 스크리닝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이 지정하는 국적자는 사증 신청 시 결핵 비발병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므로 유의할 것.

(주)국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결핵 스크리닝 제도의 개시 시기는 현재 조정 중이다.

(8) 대상 외

다음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채용 이후에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사퇴할 것.

- ① 일본 입국시 또는 장학금 지급기간 중, 현역 군인 또는 군속의 자격이 있는 자.
- ② 문부과학성 또는 수용대학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자.
- ③ 과거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일본 입국 후 사퇴한 자도 포함). 또한, 문부과학성 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유학생 수용 촉진 프로그램 (Monbukagakusho Honors Scholarship for Privately-Financed International Students))는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제도 중 다른 2023년도 장학금 지급 개시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을 하고 있는 자.
- ⑤ 신청 시 이미 재류자격 「유학」으로 일본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 및 자국에서 본 장학금의 신청 때부터 장학금 지급 개시 전까지 사비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자. 단, 현재 일본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사비 외국인유학생이라도 장학금 지급기간 개시 전에 수료하여 귀국하는 것이 신청 시 확실하며 새롭게 재류자격 「유학」을 취득해 입국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⑥ 장학금 지급 개시 이후에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으로부터 장학금을 수급할 예정인 자.
- ⑦ 신청 당시 이중국적자로 일본 입국 시(수용대학에서 학적 등 발생시)까지 일본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⑧ 1차 전형 필기시험에서 시험감독원이 금지한 부정행위를 하려 하거나 실제로 간 것으로 판명된 자

⑨ 일본 입국 후 체류자격을 '유학' 이외로 변경한 자.

(9) 장학금 지급 종료 후 귀국복직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하는 달 이내에 귀국하여, 자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교원 양성 학교의 교원으로서 복직하는 것이 확실한 자. 귀국 후에는 학교 교육에 관한 일본에서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것. 이 귀국복직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개시부터 소급해 장학금의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으며, 종료후에 귀국복직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하지 말 것.

(10) 기타

일본 유학 중 일본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는 인재로서 널리 지역의 학교나 지역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국과 일본과의 상호 이해에 공헌하는 동시에 수료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수료 후의 설문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외에, 귀국 후는 재외공관 등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자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할 의사가 있는 자를 채용한다.

2. 대학배치 및 대학에서의 전문연구

(1) 연수는 『교원연수유학생 코스 가이드』에 기재되어 있는 대학, 연수코스에서 실시한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또는 재외공관에서 열람가능)

(2) 수용대학은 문부과학성이 후보자의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어학 능력, 필기시험 결과 및 전문 연구 희망 등을 감안하여, 대학과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본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소정의 기간 내(2023년 8월 중순까지)에 수용대학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채용되지 않는다.

(3) 대학에서의 연수는 원칙적으로, 일본어 또는 영어로 진행된다. 각 코스의 사용언어는 코스 가이드에서 확인 할 것.

(4) 일본어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은, 배치된 대학 또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대학의 일본어 연수 코스에서 일본어 교육을 받는다. 일본어 교육기간은 최초 6개월간이나, 수용대학에 따라 연수와 병행하여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5) 연수는 주로 교육경영(예: 교육행정, 학교 경영), 교육방법(예: 교수·학습 시스템, 교육과정·교육평가), 전문교과연구(예: 수학, 물리, 화학, 체육) 및 견학실습(예: 수업참관, 특별교육활동 참가, 교육연구시설 견학)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연수 내용은 대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코스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것.

(6) 수용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가 부여된다. 단, 이 제도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연수코스 수료 후에는 장학금 지급기간 마지막 달 내에 귀국하여, 자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교원양성학교의 교원으로서 복직해야 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도중 또는, 수료 직후에 일본 대학원의 석사과정·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이 귀국복직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개시부터 소급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다.

3. 장학금지급기간

2023년 10월(또는 연수코스 시작하는 달)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각 대학의 연수과정 수료에 필요한 기간. 동일시기가 2023년 9월 중인 경우에도 장학금 지원 급기간 개시월은 2023년 10월로 한다.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장학금 등

(1) 장학금

일본입국 후 월 143,000엔을 지급한다. 특정 지역에서 수학연구하는 자에게는 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 단위로 가산한다. 또한 일본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각 연도별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2) 교육비

대학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 검정료는 문부과학성이 부담한다.

(3) 여비

①일본입국여비

문부과학성은 상기 「1. (6) 출발시기」에 지정한 소정의 기간 중에 도달하는 유학생에게 여행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국 내)으로부터 수용대학이 통상적인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제 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으로 한다. 교부 후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국내여비, 공항세, 공항사용료,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 국내의 여비(항공기의 환승비용을 포함한다), 여행보험료, 휴대품별송수하물에 관련된 경비 등은 유학생의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국적국에 재외공관이 소재하지 않아 비자신청을 위해 제3국에 들러 일본에 입국하는 자나 국적국에서 일본으로의 직항편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경유국내의 여비, 숙박비 등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국적국에서 경유국까지의 항공권 및 경유국에서 수용대학이 통상적인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제 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만을 문부과학성이 교부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하되, 일본 입국 전에 한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신청서의 「일본 입국전 주소」란에 기재한 주소를 「거주지」로 인정하며, 가까운 국제공항으로부터의 항공권을 수배한다. 또한, 비자신청을 위한 제3국 경유를 제외하고, 개인사정으로 국적국 이외 국가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항공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의 사정에 의해 상기 「1. (6) 출발시기」에 지정한 소정의 기간 이외에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귀국여비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연수코스를 수료하고 상기 「3. 장학금 지급기간」에 정해진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하는 달 내에 귀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항공권을 지급한다. 항공권은 수용대학이 통상적인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에서 해당 유학생이 돌아가는 장소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국 내)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교부 후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귀국하는 유학생의 일본 거주지에서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공항세, 공항사용료, 도항에 드는 특별세, 국적 국내의 여비(항공기 환승비용을 포함한다), 여행보험료, 휴대품별송수하물에 관련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자기편의 및 아래와 같은 「5. 장학금 지급정지사항」의 사유에 의해 장학금 지급일 전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월내에 귀국하지 않거나 그 달 내에 귀국했다더라도 자국의 초등, 중등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교원양성학교의 교원으로서 복직하지 않는 경우 귀국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5.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

다음의 경우 문부과학성에서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① 신청서류에 허위·부정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 ③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 1년을 넘는 징역 혹은 금고형에 처했을 때.
- ④ 대학의 학칙 등에 준거해, 징계처분으로서 퇴학정학훈고 및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혹은 제적되었을 때.
- ⑤ 대학의 학업 성적 불량이나 정학, 휴학 등에 의해 수용대학의 연수 코스 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 ⑥ 「유학」 재류자격을 새로이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하였을 때, 또는 「유학」 재류 자격이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 되었을 때.
- ⑦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 특정되어 있는 것 제외) 지급을 받았을 때.
- ⑧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월 내에 귀국하여 소속되어 있던 자국의 초등, 중등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교원양성학교의 교원으로 복직하지 않았을 때.

6. 선발

- (1) 재외공관은 제1차 전형으로서 서류 심사, 필기시험(일본어·영어)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 (2) 제1차 전형의 결과 통지는 재외공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짜로 하고, 채용 여부의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1차 전형에 합격한 자가 반드시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채용되는 것은 아니다.
- (3) 제1차 선발 합격자는 재외공관에서 문부과학성으로 추천한다. 문부과학성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제2차 선발을 행하여 제2차 선발 합격자를 결정한다.
- (4) 최종적인 채용 여부의 결과는 재외공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짜에 통지한다. 채용자에게는 수용대학도 함께 통지한다. 수용대학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덧붙여 소정의 기간 내(2023년 8월 15일까지)에 수용대학이 결정하지 않을 경우 선발되지 않는다..

7. 신청 서류

응모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No.	서류종류	원본 1부	사본 1부	비고
①	신청서	○	○	2023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4)
②	배치희망대학신청서	○	○	2023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5)
③	최종출신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	○	출신학교 또는 해당국가정부가 발행한 것.
④	최종출신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증명서	○	○	(주 6). (주 7).
⑤	재직증명서	○	○	근무처가 발행한 것. (주 8).
⑥	현재 근무처 상사의 추천장	○	○	양식은 자유. (샘플 양식 있음.) (주 8).
⑦	건강진단서	○	○	2023년도판 양식을 사용할 것. (주 9).
⑧	일본어능력자격증명서	○	●	일본어능력에 관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사본을 제출할 것. (주10) *⑧ 만 사본 2부.

(주1) ○의 서류는 필수제출. ●의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할 것.

(주2) 모든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서류가 다른 언어의 경우는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할 것

(주3) 모든 서류의 각 첫 장 우측 상단에는 반드시 ① ~ ⑧까지의 신청서류 번호 (상기표의 No. 참조)를 기재할 것.

(주4)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선명한 화질로 **사진전용 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하고, 크기는 4.5×3.5cm로, 상반신·정면·탈모할 것. 또한, 사진의 뒷면에 국적 및 이름을 기입할 것. 신청서 데이터파일에 디지털 화상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인쇄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5) 『교원연수유학생 코스 가이드』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또는 재외공관에서 열람가능)에서 희망대학을 선택하여, 코스 코드 및 희망분야와 같이 배치희망대학신청서에 기입한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20. 일본에서의 연구계획」 과 관련된 코스를 선택할 것. 관련되지 않은 코스를 선택한 경우, 대학에서 수락을 받지 못하고 일본유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할 것.

(주6) 최종출신대학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취득증명서는, 졸업증서 또는 학위증의 **사본**으로도 대응 가능하다. (일절 반환하지 않기에 원본은 제출하지 말 것). 단, 이 경우에는 해당출신대학의 책임자의 확인증명을 첨부할 것.

(주7) 최종출신학교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가 일체화된 증명서의 경우는, 형광펜 등으로 졸업을 증명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곳을 마크하여 제출한다.

(주8) 해당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종료 후 귀국복직이 조건이므로 소속 기관 상사와 귀국 후 계획을 신청 단계부터 협의할 것.

(주9) 건강진단서 제출 후 건강상태 변화(라이프플랜과 관련된 중대한 변화 포함) 발생한 경우, 수용대학이나 일본 의료기관의 수용 체제와 관련된 것인지 신속하게 재외공관에 정보공유를 할 것.

(주10) 신청자의 이름 및 해당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레벨, 점수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서 「22. 일본어 능력(자격)」 란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다음 증명서를 제출할 것. 인터넷으로부터 증명서를 인쇄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이름 및 해당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레벨, 점수 등)을 포함한 페이지를 인쇄하여 제출한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대사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8.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해 채용통지 전후 어느 시점에나 입국 일정이 변경되거나 장학금이 취소되거나 본 모집요강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문부과학성 또는 외무성(재외공관을 포함)의 합리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사유로 천재지변, 정부(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부기관의 행위(감염증에 관한 일본정부 또는 각국정부의 출입국제한, 도항제한 등의 국경 방역 대책을 포함한다), 법률, 규제나 명령의 준수, 화재, 폭풍우, 홍수나 지진,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 반란, 혁명이나 폭동 또는 파업이나 폐쇄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9. 주의사항

- (1) 일본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모국의 법률제도의 차이, 대학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일본입국 후, 장학금을 받는데 한달~한달 반정도 필요하기에, 생활 자금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최소 약 미화 2000달러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장학금은 입국하고 나면 각자가 개설하는 우체국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이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한 장학금 송금은 하지 않는다.
- (4) 일본입국 후, 본인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5) 일본입국 후, 마이넘버(사회보장번호)카드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 (6) 숙소에 대하여
 - ① 대학의 유학생 숙소
유학생을 위한 전용 숙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는 희망할 경우 소정의 조건하에 입주할 수가 있다. 다만, 입실 수에 한계가 있어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숙소에 관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연수코스에 따라서는 입국 전에 숙소비용의 지불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스가이드에서 확인할 것.
 - ② 민간 숙소 등
상기의 숙소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기숙사나 민간 숙소에 본인 부담으로 입주하게 된다.
- (7) 동반가족에 대해
동반자가 필요한 경비는 모두 채용자의 부담이지만, 가족 숙소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든다는 것도 미리 숙지할 것. 이를 위해 채용자는 먼저 단신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적당한 숙소를 마련한 후 가족을 부를 것.
- (8) 채용된 경우, 채용자에 관한 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배치대학연구과·학부, 전공분야, 재적기간, 수료후의 진로,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를,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유학생사업 (유학중의 지원, 팔로우업, 유학생제도의 개선)에 이용할 목적으로 관계 행정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채용자에 관한 정보(생년월일 및 연락처 이외)는 일본정부가 작성하는 외국인유학생의 수용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등에서 특히,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비유학생출신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채용이 결정될 때에 제출 해야 하는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정한 서약서'에 이러한 취급방침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 (9) 모집요강, 신청서류에 병기된 영문은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영문에 의한 표현이 일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 (10) 이 모집요강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나 그 외의 의문이 있다면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그 지시에 따를 것.
- (11) 본 모집요강이 지정하는 것 외, 국비외국인유학생제도의 실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일본정부가 별도로 지정한다.